

광경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이 기 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케이·디·케이(주)의 계열회사를 위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건

1998. 9. 19.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의결(약) 제98-234호/사건번호 9804독관0618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한국케이·디·케이주식회사)은 전원공급용 전선, 케이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회사인 영진테크(주), 코리아테크코포레이션(주), (주)영진텔콤, (주)신호텔레콤 등 4개 회사에 대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9,783백만원을 연리 15%,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4월 30일 까지 18,836백만원(1997년도 대여금 이월액 13,979백만원 포함)을 연리 20%로 대여한 후 원금의 일부만 상환받고 그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객체	총대여금액		회수금액(대여잔액)		적용이자율* (%)		지원금액**		
	1997	1998	1997	1998	1997	1998	1997	1998	합계
영진테크(주)	16,796	13,568	5,502 (11,294)	4,188 (9,380)	23.32	26.13	656	862	1,518
코리아테크코 퍼레이션(주)	1,478	2,183	199 (1,279)	234 (1,949)	23.32	26.13	24	147	171
(주)영진텔콤	963	1,633	40 (923)	646 (987)	23.32	26.13	27	109	136
(주)신호텔레콤	546	1,452	63 (483)	207 (1,245)	17.37	26.13	33	90	123
합계	19,783	18,836	5,804 (13,979)	5,275 (13,561)			740	1,208	1,948

* 시중은행의 평균당좌대출금리(한국은행)임

- 1997년도는 피심인이 지원업체에 대해 자금을 대여해준 시기의 평균금리 적용

- 1998년도는 1998년 1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평균금리 적용

** 대여금액을 대출기간별로 적용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이러한 행위는 1997년 4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9,783백만원 내지 13,979백만원을,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18,836백만원 내지 13,561백만원을 동 계열사에게 사실상 무이자로 대여해 주어 1,948백만원 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다. 이는 동 계열사의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해주어 동계열회사가 영위하는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부과될 과징금은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88,500천원으로 한다.

법령의 적용 및 주문

피심인의 위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4조,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문

1. 피심인은 부당하게 계열회사 영진테크(주), 코리아테크코포레이션(주), (주)영진텔콤, (주)신호텔레콤에 대하여 자금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영진테크(주), 코리아테크코포레이션(주), (주)영진텔콤, (주)신호텔레콤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앞으로 부당하게 위의 방법으로 자금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영진테크(주), 코리아테크코포레이션(주), (주)영진텔콤, (주)신호텔레콤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활자(또는 글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88,500천원

나. 납부기한 : 이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해설 및 평석

I. 머리말

본 심결례에서 문제가 되는 바는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부당한 내부거래에 관한 것이다. 이는 1996년 12월 30일 개정시에 추가된 것으로서 종래의 상품·용역부문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던 것을 자금·자산·인력 부문의 부당내부거래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모든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적용시키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가운데 본 심결례에서 문제된 부당내부거래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다.

II.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부당내부거래행위

1. 의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¹⁾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공정거래 제23조 제1항 제7호).²⁾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1996년 12월 30일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그 개정전과 다른 점은 ① 그 이전법이 '계열회사간 상품·용역부문의 부당한 내부거래' 만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6년 말 개정에서는 자금·자산·인력부문의 부당내부거래행위도 규제대상에 추가하였고, ② 계열회사만을 차별하지

1) 무체재산권은 보통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부른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조약 제2조제8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 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상세는 이기수의 6인 공저,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3쪽 아래 참조.
2)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92쪽.

3)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적용시키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2. 유형

이에는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및 부당한 인력지원이 있다.

1)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금지원이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기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다.

3)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다.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1) 지침의 제정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부당한 지원행위)의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1997년 7월 29일 제정하였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자금·자산·인력별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중점심사대상,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조사과정에서 지원행위의 유형이나 지원방법의 산정방법 등 기준이 명료하지 않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어음의 고가매입, 후순위

3)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92쪽.

사채의 고가매입, 주식의 고가매입, 부동산임차보증금의 과다지급 등 부당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고, 종전에는 정상금리의 적용순서와 방법에 대해 원칙만을 정하고 적용순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정상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적용순서와 방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등 지원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절차를 명료화하였다. 또한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경제한성유형 외에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상의 불공정성을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판단기준으로 지원크기의 절대적 기준외에 상대적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 부당성판단기준을 보완하였다.⁴⁾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출자형태로 분사화하는 회사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채무의 인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원하는 행위 및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지원주체와 비계열회사가 합병한 후 계열분리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심사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

2) 개정심사지침상 부당자금지원의 예시

개정심사지침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⁵⁾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임직원에 대해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일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한 경우
- 지원객체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등이다.

4) 공정경쟁(한국공정경쟁협회) 제42호(1999년 2월), 25쪽.

5) 공정경쟁(한국공정경쟁협회) 제42호(1999년 2월), 27쪽.

III. 결론

계열회사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대여한 후 원금의 일부만 상환받고 그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당연히 부당한 자금지원으로서 계열사는 경쟁에서 그만큼 유리한 지위에 서기 때문에 경제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기업의 부실의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데에 있다. 삼성전자/삼성자동차의 경우 및 대한생명의 경우에는 볼 수 있듯이 계열사를 위한 불법대출이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가 결국은 해당기업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많은 선의의 고객, 주주 및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회사법에서 행위를 한 당해이사나 지배주주가 이사의 책임이나 1998년 상법 회사편개정에 의해 도입된 사실상의 이사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기업 자체에 대하여도 공정거래법의 원리에 의하여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바로 본 심결례에서 문제되었듯이 계열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금지원을 하고 원금의 일부 및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제재가 가하여져야 한다. 이는 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자침】에서도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등을 부당자금지원행위의 대상으로 예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타당성이 있어 수긍할 수 있다. **공정**

